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주기(5년),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 신설 등〉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38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기본계획 수립 주기 명시	3
2.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병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6. 10.
3. 회 부 일 : 2024. 6.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 규정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경우 정부가 차산업과 관련한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여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별도 기구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그 주

기를 명시하고 차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시장의 변화에 보다 시의성 있게 대응하도록 하고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기본계획 수립 주기 명시

개정안은 차(茶¹⁾)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u><신설></u>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 ----- ----- <u>5년마다 수립하여</u> -----.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부 칙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차나무의 잎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차의 종류)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녹차(차나무의 잎을 덪거나 찌서 제조한 차를 말한다)

2. 홍차(차나무의 잎을 발효시켜 제조한 차를 말한다)

3. 차나무의 잎 등과 다른 곡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차

4. 그 밖에 차나무의 잎, 열매 또는 꽃 등을 이용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한 제조방법 외의 방법으로 제조한 차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5조²⁾는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농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차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농식품부는 '16년부터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³⁾하고 있음('16.1월 법 시행 후, '16.12월 1차 기본계획('17~'26) 수립).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은 차 시장 변화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차 시장의 변

2)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차산업 육성과 차 이용의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차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차 재배와 원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4. 차산업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차의 소비 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6. 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법 제정·시행('16.1월) 후 1차 기본계획('17~'26) 수립('16.12월)

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국내 차산업의 재배면적은 2017년 3,050ha 대비 2022년 2,655ha로 감소하고, 재배 농가수는 2017년 3,406호 대비 2022년 2,682호로 감소하는 등 국내 차 생산업의 규모는 축소되는 추세임.

<국내 차산업 통계>

구 분		‘17	‘18	‘19	‘20	‘21	‘22
생 산	농가수(호)	3,406	2,597	2,638	2,473	2,498	2,682
	재배면적(ha)	3,050	2,744	2,845	2,704	2,721	2,655
	생산량(톤)	4,026	3,878	4,758	4,061	3,576	3,581
	생산액(억원)	604	581	714	609	536	537
소 비	1인당(g)	91	97	114	95	87	91
	연간(천톤)	4.7	4.7	5.9	5.0	4.5	4.7
수출입	수입량(톤)	1,188	1,514	1,510	1,374	1,461	1,627
	수입액(천\$)	16,004	20,851	20,039	21,220	24,987	26,223
	수출량(톤)	513	354	363	500	515	484
	수출액(천\$)	6,638	5,877	4,656	6,833	16,785	13,207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차산업은 커피 등 대체재 시장의 확대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2016년에 처음으로 수립된 「차(茶)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기본계획(’17~’26)」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생산액의 증

대 목표('16년 600억원 → '26년 1,200억원)와 현재 생산액('22년 기준 537억원) 간 다소 차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기본계획이 10년 주기로 수립되어, 시장상황이 적시에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채로 관련 정책이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함.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계획 주요 내용>

비전	차 산업 부흥을 통한 신동력산업 육성 및 국민건강 향상	
목표	◇ 차 산업화: ('16년) 생산액 600억원 → ('26) 1,200억원 ◇ 차 명품화: ('16년) 수출액 5백만\$ → ('26) 10백만\$	
추진 방향	○ 고품질 산업화 추진으로 품질·가격 경쟁력 제고 - 단기: 품질 고급화, 안전성 강화 등 소비자 신뢰향상을 통한 국내 수급안정 - 중·장기: 주산지 중심 산업화, 시설현대화 등으로 가격 경쟁력 강화 ○ 한국 대표 명차 육성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 ○ 차세대(어린이, 청소년) 차문화 교육 연계 소비기반 확대	
세부 추진 과제	1. 고품질 산업화 추진	가. 주산지 중심 산업화단지 육성 나. 안전성 관리 및 유통 투명성 강화 다. 품질고급화 및 품질표시 강화 라. 민간단체 역량 강화 및 협업
	2. 한국 대표 명차 육성	가. 대표 브랜드 육성 및 우수품종 개발 나. 수출품종 다변화 및 신수요 창출 R&D 다. 수출 전문조직 육성 및 마케팅 강화
	3. 차 소비문화 확대	가. 생활 속 녹차 대중화 기반 조성 나. 차 소비문화 보급 확대 다. 교육기관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5년 단위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시장의 변화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함으로써 차산업 경쟁력 강화 및 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입법례>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인삼산업법>

제3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등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생략) <u><신설></u> <u><신설></u>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5조의2에 따른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제5조의2(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 ① <u>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②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 1. <u>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u> 2. <u>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정책의 분석·평가 및 점검</u> 3. <u>차산업 관련 제도의 개선</u> 4. <u>차산업 및 차문화 관련 연구의</u>

현 행	개 정 안
	<u>수행</u> 5. <u>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정책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u> 6. <u>그 밖에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③ <u>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④ <u>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u> 1. <u>차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u> 2. <u>차산업종사자를 대표하는 사람</u> 3. <u>학계 및 차산업 관련 업계의 전문가</u> 4. <u>그 밖에 차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⑤ <u>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가. 관계 부처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기본계획 수립 시 차산업 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현행법에 추가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음.

(2) 행정안전부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성격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되어 있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거나,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로 의견수렴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없으며,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나. 검토의견

국내 차 재배농가수(‘17년 3,406호 → ‘22년 2,682호), 재배면적(‘17년 3,050ha → ‘22년 2,655ha), 생산액(‘17년 604억원 → ‘22년 537억원) 등 국내 차 산업의 규모는 현재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차 산업 종사자·전문가가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국내 차산업 생산 통계>

구 분		‘17	‘18	‘19	‘20	‘21	‘22
생산	농가수(호)	3,406	2,597	2,638	2,473	2,498	2,682
	재배면적(ha)	3,050	2,744	2,845	2,704	2,721	2,655
	생산량(톤)	4,026	3,878	4,758	4,061	3,576	3,581
	생산액(억원)	604	581	714	609	536	537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개정안은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차산업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차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등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차산업의 발전과 차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 위원회법’)⁴⁾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란 행정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임.

동 기관은 행정기능 및 행정수요의 증대에 대응하여 국민을 행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전문지식의 도입, 행정의 공정성 확보, 이해관계의 조정

4) 「행정기관위원회법」 제2조(기본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정하고 적절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합의 및 협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는 행정·정책의 통합·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됨.

행정기관 위원회는 크게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됨.

행정위원회는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함.

자문위원회는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로서 자문위원회의 결정이 행정기관을 기속하면 의결위원회, 불기속하면 심의위원회로 구분함.

현행법상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설치되고 있음.

<행정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분>

구분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개념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
권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1조 ⁵⁾ 행정기관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권한이 있음 (행정, 준입법 및 준사법 기능 보유하며, 행정권한을 위원회 명의로 직접 행사할수 있음)	행정기관 의사결정을 지원하지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권한은 없음
설치요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⁶⁾ ① 업무내용이 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업무성질이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③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 ④ 업무가 계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① 업무내용이 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업무성질이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세부유형	—	위원회 결정의 행정기관 기속여부에 따라 기속되는 ① 의결위원회, 불기속되는 ② 심의위원회로 구분, ③ 심의의결위원회도 존재
사무기구	설치가능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종합하는 위원회를 제외하고 설치 불가능

※ 자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참조

안 제5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경우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심의내용이 행정기관을 기속하지 않는 경우 로써 자문위원회 중 심의위원회에 해당함.

국내 차산업의 규모는 현재 감소⁷⁾하는 추세인바,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차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참여토록 할 경우 차산업의 발전과 차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조문을 두어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을 설치·운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함.

따라서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정책자문위원회 등 기존 제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개정안의 취지 달성에 보다

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1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 등 재결을 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6) 「행정기관위원회법」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행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국내 차 재배농가수('17년 3,406호 → '22년 2,682호), 재배면적('17년 3,050ha → '22년 2,655ha), 생산액('17년 604억원 → '22년 537억원)

8)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향후 5년간 7,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효과적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416